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5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한정애・이수진・송옥주

조인철 • 한병도 • 박홍배

서영교 • 박홍근 • 이건태

임오경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 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대여·사용·운행한 질권자 및 질 권자로부터 이를 양도·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운행한 자, 질권설 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 · 운행한 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 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 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다. <신 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현 행 | 개 정 안 |
|---|------------------------|---------------------|
| 다. < 신 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실권설정을 하고 실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 |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 |
| 조심 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 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 | 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의 장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u><신 설></u> |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정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
|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의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정 | | 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정 | | 1.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
|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장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업으로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정 | | <u>한 자</u> |
| 이를 사용・운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장 | | 2.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
|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장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이를 사용·운행한 자 <u></u> |
|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3.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동산 |
| 에게 양도한 자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고 |
|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질권설정된 특정동산을 제3자 |
|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에게 양도한 자 |
|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4. 제9조를 위반한 특정동산의 |
|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질권자로부터 특정동산을 양 |
|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도받아 사용 또는 운행한 자 |
| |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질권설정 |
| | | 만 한 질권자는 1년 이하의 징 |
| 역 또는 1전만원 이하의 벌금 | |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